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2. 1.

특 허 청
(등 록 과)

법 제 처 심사 前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권 등의 회복요건을 완화하는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서명 및 날인에 관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10호가목(4) 중 “1통”을 “또는 본인서명사실증명서 1통”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하단 신청란의 “등록권리자”를 “등록권리자 (대리인)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대위신청인)”을 “(대위신청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제9호가목 중 “인감”을 “기명한 후 서명 또는”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제10호다목(2)[예] 중 “명기한”을 “적은”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회복신청 원인】란 기호(□) 중 “책임질 수 없는”을 “정당한”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10호가목 중 “책임질 수 없는”을 “정당한”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제13호나목(2)[예] 중 “명기된 제출서류”를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로 하고, 같은 뒤쪽 제13호라목 중 “책임질 수 없는”을 “정당한”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제7호나목(2) 중 “명기하여”를 “명확하게 적어”로 하며, 같은 뒤쪽 제7호나목(2)[예] 중 “명기한”을 “적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앞쪽)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구분】 ☐ 권리 전부말소 ☐ 권리 일부말소 ☐ 등록권리 말소 ☐ 지분 말소 ☐ 특약 말소
- ☐ 전용실시(사용)권 말소 ☐ 전용실시(사용)권자 말소
- ☐ 통상실시(사용)권 말소 ☐ 통상실시(사용)권자 말소
- ☐ 질권 말소 ☐ 질권자 말소 ☐ 근질권 말소 ☐ 근질권자 말소
- ☐ 신탁권 말소 ☐ 신탁권자 말소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등록의무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말소할 지분】) (기재요령 제3호 바. 참조)

(【대위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위원인】)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권리의 표시】)

(【일부말소대상】)

(【말소대상특약】) (기재요령 제7호라목 참조)

【등록원인】

(【가등록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위신청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12호 참조)

(【서류명】)

(【특허(등록)번호(접수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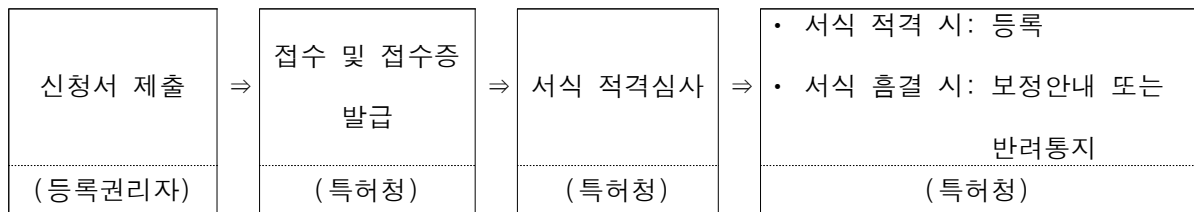
(뒤쪽)

1. 서식의 용도

이 서식은 특허(등록)권 또는 그 밖의 특허(등록)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을 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사항	신청내용
권리 전부말소	설정등록되어 있는 권리 전체를 말소하려는 경우
권리 일부말소	둘 이상의 청구항(물품, 지정상품) 중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
등록권리 말소	특허(등록)권자란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 특허(등록)권자 전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권리 전부말소'를 선택합니다.
지분 말소	특허(등록)권자란의 특정 특허(등록)권자의 지분의 전부 및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
특약 말소	특허(등록)권자란 또는 실시(사용)권자란의 특약을 전부 말소하려는 경우
전용실시(사용)권 말소	전용실시(사용)권자란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전용실시(사용)권자 말소	전용실시(사용)권자란의 특정 실시(사용)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통상실시(사용)권 말소	통상실시(사용)권자란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통상실시(사용)권자 말소	통상실시(사용)권자란의 특정 실시(사용)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질권 말소	질권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질권자 말소	권리자란의 특정 질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근질권 말소	근질권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근질권자 말소	권리자란의 특정 근질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신탁권 말소	신탁권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신탁권자 말소	신탁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신청구분】란

말소의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등록권리자】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3. 【등록의무자】란

가. "계약해제"로 인한 말소등록의 경우에는 기재요령 제12호가목(3) 및 (4)의 서류는 첨부할 수 있습니다.

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권리전부말소등록신청일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을 필요 없이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그 외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특허고객번호 대신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를 적습니다.

다.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라.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 【성명】 , 【특허고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의무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마. 등록의무자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명의인인 경우에는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란은 국제등록부에 적힌 문자와 동일한 문자로 적으며, 그 이외의 다른 난은 한글로 적습니다.

바. 【말소할 지분】란

(1) 말소될 등록의무자의 지분을 적습니다.

(2) 지분은 "○/□(분자/분모)"과 같이 분수로 적되 반드시 전체지분에 대한 비율여야 합니다.

(3) 지분의 일부를 말소하기 위하여 본 신청서에 말소할 지분을 적어 신청할 경우에는 먼저 별지 제21호서식(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을 통해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등록해야 합니다.

(4) 등록의무자의 지분이 서로 다른 순위번호로 중첩 등록되어 생성된 경우에는 【말소할 지분】란이 등록의무자의 전체 지분 중 어느 순위번호로 생성된 지분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분 앞에 순위번호를 적습니다.

[예 1] 단일한 순위번호의 지분 전부 설정

【설정할지분】 1/8 【순위번호 3번(지분 1/8)】

[예 2] 복수의 순위번호의 지분 전부 말소

【말소할 지분】 1/4 【순위번호 3번(지분 1/8), 순위번호 7번(지분 1/8)】

[예 3] 복수의 순위번호의 지분 일부 말소

【말소할 지분】 1/8 【순위번호 3번(지분 1/16), 순위번호 7번(지분 1/16)】

4. 【대위신청인】란

「민법」상 채권자대위 혹은 특별법에 따른 대위신청일 경우에 대위신청인인 채권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대위신청의 경우에 대위신청인과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또는 판결에 의한 신청 등의 경우에는 대위신청인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대위원인】란

가. 다음 예와 같이 대위신청인(채권자)의 대위권 발생원인인 피보전채권과 그 채권이 발생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적습니다.

[예1] 대위원인이 매매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매매에 의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

[예2] 대위원인이 대여금채권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

나. 대위에 의한 신청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가압류결정서, 압류조서 등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증서, 매매계약서 등 사서증서도 포함됩니다.

6.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1]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예 2]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의무자 ○○○의 대리인

라.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7. 【등록대상의 표시】란

가.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서로 적습니다. 다만,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 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 【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권리구분	번호란	기재의 예
특허	【특허번호】	10-1234567-00-00
실용신안	【등록번호】	20-1234567-00-00

디자인	【등록번호】	30-1234567-00-00 (단수디자인) 30-1234567-00-01 (복수디자인)
국제디자인	【국제등록번호】	DM/012345 (단수디자인) DM/012345-001(복수디자인)
상표	【등록번호】	40-1234567-00-00
국제상표	【국제등록번호】	0123456

※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 디자인의 경우 2014. 6. 30. 출원 건까지는 등록번호의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합니다.

※ 2014. 7. 1. 이후 출원한 복수디자인은 디자인 각각에 등록번호를 부여하므로 분할이전이 불필요합니다.

※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을 표시합니다.
나. (【권리의 표시】)란에는 이전등록, 실시권, 질권 또는 이들의 가등록 등 특허(등록)권 이외의 경우에만 적으며,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 전용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제00번

【등록사항】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다. (【일부말소대상】)란에는 권리의 일부말소등록(지정상품·업무 일부말소등록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으며,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1] 【일부말소대상】

【말소할 항수】 3 항

【말소할 항】 3, 4, 5

[예 2] 【일부말소대상】

【상품류】 제20류

【지정상품】 침대, 의자, 탁자, 식탁, 책꽂이, 옷걸이, 진열장, 쇼파

【상품류】 제21류

【지정상품】 가구닦는 솔, 가구용 먼지털이, 깃총채, 청소용 걸레

라. 【말소대상특약】란

등록된 특약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말소하려는 특약란을 적습니다. 등록된 특약의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변경등록 신청서)을 통해 특약 변경의 형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 【말소대상특약】

【해당란】 등록권자란

【순위번호】 제00번

【등록사항】 특약

마.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사건 상호 간에 신청구분,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지분을 적은 경우에는 그 지분, 등록원인 및 가등록 신청 여부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8. 【등록원인】란

“포기”, “지분포기”, “계약해제”, “존속기간만료”, “채무변제”, “사망”, “말소(해제)”,

“합병”, “영업의 폐지”, “본등록에 의한 말소”, “판결” 등 해당하는 사항을 적으며, 병합신청의 경우에는 등록원인이 동일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가등록신청】란

가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가등록신청"으로 적습니다.

10.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예: 포기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 선택, 제권판결등본, 채권증서 및 채무변제서,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계약해제증서, 재판의 등본 등)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합니다.

-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 (3) 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증명서) 1통
- (4)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증명서 1통**
- (5)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 (1)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위임장 1통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0]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보호번호: 0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에 의해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라.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권리포기서인 경우에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권리 포기서

【권리자】

성명 :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등 록 번 호 : 10-111111(특허 제111111호)

발명의 명칭 : 거북선 제조방법

권리의 표시 : (순위번호 3번 전용실시권) *포기 권리가 실시권이나 질권인 경우
그 권리의 종류와 순위번호를 적습니다.

지 분 : 1/3 * 지분의 포기일 경우 포기할 지분을 적습니다.

【내용】

본인은 위에 적힌 권리(지분)를 포기하고, 말소등록 신청 등을 통해 등록원부에 적힌 권리를 말소
할 것임을 확인한다.

【작성일】 2011 년 7 월 13 일

권리자



(인감날인)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 (3)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스캐닝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전자적 이미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 작성 시 유의사항

포기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대위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위신청인도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고,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며,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대상권리】 □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근질권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지분】

(【대위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대위원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권리의 표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
등록권리자
(대위신청인)

(대리인)
(대리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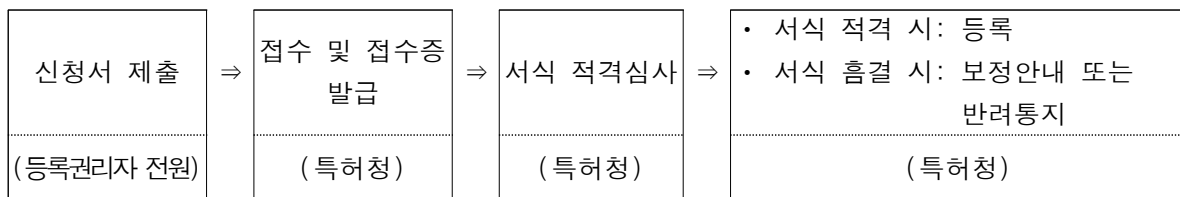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1. 서식의 용도

이 서식은 2인 이상의 공동 권리자로 등록 되어 있으나, 지분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 공동 권리자들의 지분을 확인등록신청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대상 권리	신청의 내용
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근질권	특허(등록)권, 실시(사용)권, 질권, 근질권의 공유자 간 지분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대상권리】란

신청대상이 되는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등록권리자】란

가.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 【주소】란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주소를 적습니다. 함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으로 적힌 주소가 확인되면 【특허고객번호】상의 주소가 신청서에 적힌 주소로 변경됩니다.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시]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생년월일】 000000

【주소】 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0

라. 【지분】란

(1) 지분은 "○/□(분자/분모)"과 같이 분수로 적되, 반드시 전체지분에 대한 비율여야 합니다.

(2) 각 【등록권리자】란에 적힌 지분의 합은 반드시 1이어야 합니다.

(3) 【첨부서류】란에는 공유자 간 지분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3. 【대위신청인】란

「민법」상 채권자대위 혹은 특별법에 따른 대위신청일 경우에 대위신청인인 채권자의 성명(명칭)과 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습니다.

대위신청의 경우에 대위신청인과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또는 판결에 의한 신청 등의 경우에는 대위신청인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대위원인】란

가. 다음 예와 같이 대위신청인(채권자)의 대위권 발생원인인 피보전채권과 그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적습니다.

[예1] 대위원인이 매매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매매에 의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

[예2] 대위원인이 대여금채권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

나. 대위에 의한 신청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가압류결정서, 압류조서 등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증서, 매매계약서 등 사서증서도 포함됩니다.

5.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1]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예 2]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의무자 ○○○의 대리인

라.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 이라 적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6. 【등록대상의 표시】란

가.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서로 적습니다. 다만,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 【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권리구분	번호란	기재의 예
특허	【특허번호】	10-1234567-00-00
실용신안	【등록번호】	20-1234567-00-00
디자인	【등록번호】	30-1234567-00-00 (단수디자인) 30-1234567-00-01 (복수디자인)
국제디자인	【국제등록번호】	DM/012345 (단수디자인) DM/012345-001(복수디자인)
상표	【등록번호】	40-1234567-00-00
국제상표	【국제등록번호】	0123456

※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 디자인의 경우 2014. 6. 30. 출원 건까지는 등록번호의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합니다.

※ 2014. 7. 1. 이후 출원한 복수디자인은 디자인 각각에 등록번호를 부여하므로 분할이전이 불필요합니다.

※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을 표시합니다.

나. (【권리의 표시】)란에는 등록의 대상이 실시권, 사용권 또는 질권인 경우에만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 전용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제00번

다.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사건 상호 간에 대상권리, 등록권리자, 등록원인 및 각 권리의 지분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7. 【등록원인】란

“지분확인등록” 이라고 적습니다.

8.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공유지분확인서, 판결 정본 등) 1통
-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 (3)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 (1)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위임장 1통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에 의해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 라.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공유지분확인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합니다.

[예]

【서류명】공유지분확인서

【권리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분】삼분의 일(1/3)

【권리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분】삼분의 이(2/3)

【사건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권리의 표시】) (실시권, 질권 등 특허(등록)권 외의 경우에만 기재)

【취지】 위 사건에 관한 특허(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상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지분을 위와 같이 확인한다.

【작성일자】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 (3)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스캐닝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전자적 이미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공동 권리자 전원이 신청하고 완감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나. 지분 위에 이해관계인(질권자, 실시권자,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압류권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전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대위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위원인】**)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번호】

【갱신등록 제외 대상】

【분류구분】 KR(NICE)

【상품류】

【지정상품(업무)】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신청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등록료】 (기재요령 제7호 참조)

【분할납부 여부】

☐전액납부

☐분할납부

【갱신등록료】

개류

원

(【지정상품 가산금】

개상품

원)

【등록면허세】

【합계】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사항정정신청】

【첨부서류 및 견본】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10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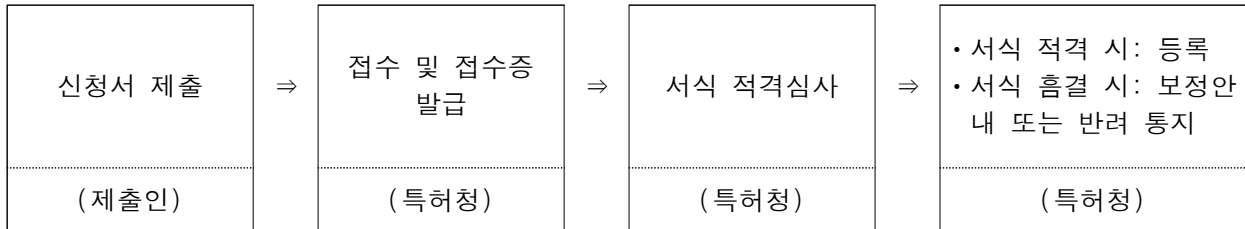
(【서류명】)

(【출원번호(심판번호)】)

1. 서식의 용도

이 서식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위하여 제출합니다.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등록권리자】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다. 2인 이상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대표자 선임신고를 신청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의 【특허고객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신청인대표자”와 같이 적으며, 【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라.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2. 【대위신청인】란

「민법」상 채권자대위 혹은 특별법에 따른 대위신청일 경우에 대위신청인인 채권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대위신청의 경우에 대위신청인과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또는 판결에 의한 신청 등의 경우에는 대위신청인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위원인】란

가. 다음 예와 같이 대위신청인(채권자)의 대위권 발생원인인 피보전채권과 그 채권이 발생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적습니다.

[예1] 대위원인이 매매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매매에 의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

[예2] 대위원인이 대여금채권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

나. 대위에 의한 신청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가압류결정서, 압류조서 등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증서, 매매계약서 등 사서증서도 포함됩니다.

4.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란의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란에 “위임장” 이라고 적고 이를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5. 【등록번호】란

등록된 권리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권리 구분	번호 기재의 예
상표	40-1234567-00-00
업무표장	42-1234567-00-00
단체 표장	43-1234567-00-00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44-1234567-00-00

※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을 표시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6. 【갱신등록 제외 대상】란

가. 등록원부상의 모든 상품류 및 지정상품(업무)에 대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갱신등록 제외 대상】란 중 【상품류】란에는 “없음”이라고 적고, 【분류구분】 및 【지정상품(업무)】란은 삭제합니다.

나. 【분류구분】란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원하지 않는 상품이 등록원부상 구 한국분류인 경우 【분류구분】란에 “KR”이라고 적으며, 국제분류인 경우 【분류구분】란에 “NICE”라고 적습니다.

다. 【상품류】, 【지정상품(업무)】란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원하지 않는 상품의 상품류 및 지정상품(업무)을 적습니다. 둘 이상의 류에 대한 등록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예] 등록원부상의 지정상품(구 한국분류 제45류 한복바지, 한복저고리, 국제분류 제1류 구리비료, 부식토비료, 국제분류 제2류 미가공 천연수지, 코펠, 금속보호제, 국제분류 제3류 머릿기름, 선오일, 불연지) 중 국제분류 제1류 구리비료 및 국제분류 제3류 선오일에 대해서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려는 경우

【갱신등록 제외 대상】

【분류구분】 KR

【상품류】 제45류

【지정상품(업무)】 한복바지, 한복저고리

【갱신등록 제외 대상】

【분류구분】 NICE

【상품류】 제1류

【지정상품(업무)】 부식토 비료

【갱신등록 제외 대상】

【분류구분】 NICE

【상품류】 제2류

【지정상품(업무)】 미가공 천연수지, 코펠, 금속보호제

【갱신등록 제외 대상】

【분류구분】 NICE

【상품류】 제3류

【지정상품(업무)】 머릿기름, 불연지

라. 삭제 <2018. 6. 29.>

7. 【등록료】란

가. 【분할납부 여부】란

(1)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상표법」 제72조에 따른 전액납부인지, 분할납부인지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존속기간갱신신청하려는 자가 분할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금액의 전액을 존속기간갱신 신청서

에 의해 납부해야 합니다.

- (3) 존속기간갱신신청하려는 자가 분할납부하는 경우 1회차분에 해당하는 납부금액은 존속기간갱신 등록신청서를 통해 납부하고, 2회차분에 해당하는 납부금액은 별지 제25호서식(납부서)에 의해 내야 합니다.

나. 【갱신등록료】란

- (1)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전액납부 또는 분할납부에 해당하는 등록료를 적습니다.
(2) 납부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연장된 기간 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적습니다.
(3) 존속기간갱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단, (2)의 경우는 제외됩니다)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및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료를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4) 등록료 보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납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한다.

다. 【지정상품 가산금】란에는 갱신하려는 각류의 지정상품 수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상품개수와 가산금액을 적습니다.

라. 【등록면허세】란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납부의 경우에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액(지방교육세 포함)을 적습니다.

마. 【합계】란에는 【등록료】란 및 【등록면허세】란에 적힌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바. 등록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부여일의 다음 날까지 납부합니다.

8.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해야 합니다.

9.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사항 정정신청】란

이미 납부한 특허(등록)료·수수료 또는 등록면허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금액을 이 서식에 따라 발생하는 특허(등록)료 및 등록면허세로 이체하려는 경우에 다음 예와 같이 【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접수번호】란을 만들어 해당 서식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접수번호를 적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번호의 수만큼 【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접수번호】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사항 정정신청】

【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접수번호】 2-1-2006-0518678-52

10.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의 다음 줄에 【기타】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적고, 【첨부서류】란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 서류를 첨부합니다.
(2) 냄새상표의 경우 30ml 이상의 액상형태의 밀폐용기 3통 또는 향이 포함된 물질을 3ml 이상 도포한 향 패치 30매를 냄새상표의 견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으시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

료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상표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조, 「상표법」 제46조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증명서만 해당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상표등록출원서

【출원번호】 40-2007-1234567

-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상표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조, 「상표법」 제46조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증명서만 해당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 (3)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스캐닝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전자적 이미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 작성 시 유의사항

신청인(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납 부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납부구분**】 ☐ 설정 등록료 ☐ 연차 등록료
☐ 존속기간갱신등록료 2회차 납부 ☐ 등록료 보전
☐ 지정상품·업무 추가 등록료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지분】)(기재요령 제2호 참조)

【**납부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대리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위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위원인】)

【**납부대상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번호, 등록번호)】

【청구항(디자인, 상품류)수】

(【대표 지정상품(업무)의 명칭】)

(【디자인의 일련번호】)

(【포기대상】)

(【납부연차(납부회차)】)

(【감면사유】)

(【특약】)

【**특허(등록)료**】

【특허(등록)료】

(【등록면허세】)

【합계】

【**수수료자동납부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회복신청】

【회복신청 원인】 ☐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 회복

☐ 책임질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소멸된 특허(등록)출원 및 특허(등록)권 회복

(【특허(등록)증 수령방법】) ☐ 전자문서 ☐ 방문수령(대전) ☐ 방문수령(서울) ☐ 우편수령

☐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 방문수령(서울 송달함)

(【특허(등록)증 수령인】)

(【성명】)

(【전자우편 번호】)

(【주소】 및 【우편번호】)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사항정정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납부자

(대위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출원, 등록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13호 참조)

(【서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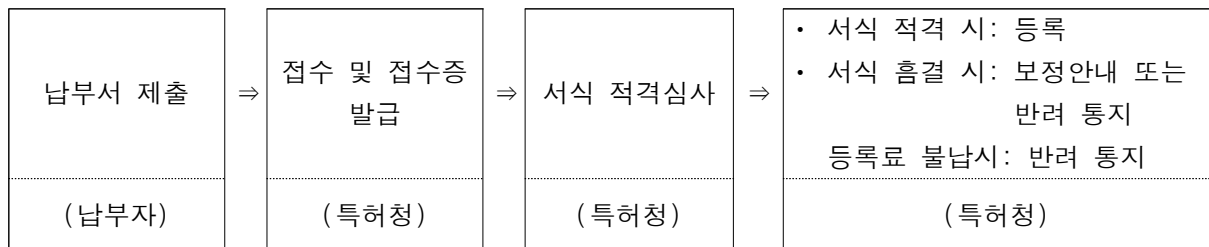
(【특허(등록)번호(출원번호)】)

1. 서식의 용도

이 서식은 다음 예와 같이 특허료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납부 사항	납부의 내용
설정특허료(등록료)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연차특허료(등록료)	연차특허(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존속기간갱신등록료 2회차 납부	존속기간갱신등록료의 2회차 납부를 하려는 경우 * 존속기간갱신등록료의 1회차 납부는 별지 제23호서식인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통해 납부합니다.
지정상품(업무) 추가등록료	지정상품 등의 추가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특허료(등록료)보전	특허(등록)료,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또는 상표등록료(존속기간갱신등록료) 분할납부 시 2회차 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전명령을 받고서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납부구분】란

가. 납부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1회차 등록료납부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납부하며, 본 서식은 존속기간갱신등록료의 2회차 등록료만을 납부할 경우에 제출합니다.

2. 【등록권리자】란

가. 설정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의 회복신청을 하면서 연차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또는 지정상품(업무) 추가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등록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라.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 【성명】 , 【특허고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마. 【지분】란

- (1) 권리자간에 지분의 약정이 있고 이를 등록하려는 경우에 적습니다.
- (2) 지분은 "○/□(분자/분모)"과 같이 분수로 적되, 반드시 전체지분에 대한 비율여야 합니다.
- (3) 각 【등록권리자】란에 적힌 지분의 합은 반드시 1이어야 합니다.
- (4) 【첨부서류】란에는 공유자 간 지분약정을 증명하는 서면(공유지분확인서 또는 판결 정본 등)을 첨부합니다. 다만, 출원 중에 지분을 정하고 설정등록 시 그 지분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 간 지분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납부자】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 【주소】 , 【전화번호】란을 적으며, 【특허고객번호】란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적습니다.

나. 납부자가 대리인인 경우

【성명】 , 【대리인번호】란에 각각 대리인의 성명과 코드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성명】란을 【명칭】란으로 바꾸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명칭을 적고, 【대리인번호】란에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 【성명】 , 【특허고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4. 【대위신청인】란

「민법」상 채권자대위 혹은 특별법에 따른 대위신청일 경우에 대위신청인인 채권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대위신청의 경우에 대위신청인과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또는 판결에 의한 신청 등의 경우에는 대위신청인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대위원인】란

가. 다음 예와 같이 대위신청인(채권자)의 대위권 발생원인인 피보전채권과 그 채권이 발생한 법률 관계를 간략히 적습니다.

[예1] 대위원인이 매매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매매에 의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

[예2] 대위원인이 대여금채권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

나. 대위에 의한 신청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가압류결정서, 압류조서 등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증서, 매매계약서 등 사서증서도 포함됩니다.

6. 【납부대상의 표시】란

가. 【출원번호】란에는 납부대상이 되는 사건의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연차특허(등록)료를 납부하거나 이를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번호(등록번호)】란에 해당하는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적습니다(설정등록 시 일련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출원번호에 대하여 하나의 일련번호만 적으셔야 합니다).

번호란	해당번호	기재의 예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40-2005-1234567
【특허번호(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10-1234567-00-00

[참조1] 출원별 【특허(등록)번호】의 표기방법

특허출원 : 10-2007-1234567

실용신안등록출원 : 20-2007-1234567

디자인등록출원 : 30-2007-1234567

상표등록출원 : 40-2007-1234567

업무표장등록출원 : 42-2007-1234567

단체표장등록출원 : 43-2007-1234567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 44-2007-1234567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50-2007-1234567

업무표장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52-2007-1234567

단체표장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53-2007-1234567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54-2007-1234567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 70-2007-1234567

지정업무 추가등록출원 : 72-2007-1234567

단체표장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 73-2007-1234567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 74-2007-1234567

[참조2] 권리별 【특허(등록)번호】의 표기방법

특 허 : 10-1234567-00-00

실용신안: 20-1234567-00-00

디자인: 30-1234567-00-00 (단수디자인), 30-1234567-00-01 (복수디자인)

상표: 40-1234567-00-00

업무표장: 42-1234567-00-00

단체표장: 43-1234567-00-00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44-1234567-00-00

※ 디자인의 경우 2014. 6. 30. 출원 건까지는 등록번호의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합니다.

※ 2014. 7. 1. 이후 출원한 복수디자인은 디자인 각각에 등록번호를 부여하므로 분할이전이 불필요합니다.

※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을 표시합니다.
나.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따른 등록결정을 받아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다. 【총 청구항(디자인, 상품류)수】란에는 특허(등록)료를 납부할 당시의 총 청구항 수, 디자인 수, 상품류 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지정상품·업무 추가등록료를 납부하려는 때에는 당해 등록료 납부 당시의 추가등록대상 상품류 수를 적습니다. 다만, 특허(등록)료 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 난을 적지 않습니다.

라. 【대표 지정상품(업무)의 명칭】란

상표등록증에 기재되는 대표 지정상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상품을 신청서에 적습니다.

[예] 화장품

마. 【포기대상】란은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등록)료를 납부할 때에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지정업무)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경우, 다음 예와 같이 【포기대상】란의 다음 줄에 【대상청구항】(일부 디자인의 포기인 경우는 【디자인 일련번호】 및 【디자인대상 물품】, 일부 지정상품(업무)의 포기인 경우는 【상품류】 및 【지정상품(업무)】)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상표권 설정등록료를 분할 납부할 때에는 1회차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포기대상】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 1]

【포기대상】

【대상청구항】 3, 4, 5

[예 2]

【포기대상】

【상품류】 제20류

【지정상품】 침대, 의자, 탁자, 식탁, 책꽂이, 옷걸이, 진열장, 쇼파

【상품류】 제21류

【지정상품】 가구닦는 솔, 가구용 먼지털이, 깃총채, 청소용 걸레

바. 【납부연차(납부회차)】란

(1) 【납부연차】란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대한 설정 또는 연차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연차(납부회차)】란을 【납부연차】란으로 하고 특허(등록)료 납부연차를 다음 예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 납부하는 특허(등록)료가 제3년분부터 5년인 경우

【납부연차】 3-5

(2) 【납부회차】란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로서 「상표법」 제72조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연차(납부회차)】란을 【납부회차】란으로 하고 납부 회차를 다음 예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또는 지정상품·

업무추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1] 상표권 설정등록 시 분할납부하면서 1회차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회차】 1회차

[예 2] 상표권 설정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시 분할납부하여 2회차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회차】 2회차

※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시 분할납부하면서 1회차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을 통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상표권 설정등록료(존속기간갱신등록료)의 2회차 납부 시에는 1회차 납부 시의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 특허(등록)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란에 해당하는 감면(면제)사유를 적고 감면(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다만, 특허(등록)료의 감면(면제)은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의 최초 3년분에 한하며, 상표등록료의 경우에는 감면(면제)이 되지 않습니다)
- 아.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2건 이상을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권리 회복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병합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7. 【특허(등록)료】란

가. 【특허(등록)료】란

(1) 설정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포기 후에 납부해야 할 특허(등록)료 및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특허(등록)료의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의 합산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등록)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감면 또는 면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2) 연차 특허(등록)료 및 분할납부한 상표권 설정등록료(존속기간갱신등록료)의 2회차를 납부하는 경우 연차 특허(등록)료 및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특허(등록)료의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의 합산 금액을 적습니다. 특허(등록)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감면 또는 면제 후의 금액을 적고, 여러 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총 금액을 산정하여 적습니다. 상표권 설정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 시 분할납부하면서 2회차를 납부하는 경우(납부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연장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원래의 상표권설정등록료(존속기간갱신등록료) 2회차분을 적고, 존속기간갱신신청기간을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및 신청기간경과에 따른 가산료를 합산한 금액의 2회차분을 적습니다. 여러 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총 금액을 산정하여 적습니다.

(3) 존속기간갱신 등록료 또는 지정상품·업무추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하는 존속기간갱신 등록료 또는 지정상품·업무추가 등록료를 적습니다.

(4) 특허(등록)료 보전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시에 납부해야 할 특허(등록)료에서 일부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등록)료 및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료를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등록)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는 감면 또는 면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등록면허세】란에는 상표등록료,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납부의 경우에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액(지방교육세 포함)을 적습니다.

다. 【합계】란에는 【특허(등록)료】란 및 【등록면허세】란에 적은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라. 특허(등록)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합니다.

8. 【수수료자동납부번호】란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9.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란

특허(등록)료를 보전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특허·등록료 납부서의 접수번호(예: 2-1-06-1234567-22)를 적습니다.

10. 【회복신청】란의 표시

가. 출원인 또는 특허(등록)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말미암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이내에 특허(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포기(소멸)된 특허(등록)출원 또는 특허권(실용신안등록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특허(등록)료 (추가)납부에 의해 회복 신청하려는 경우 또는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을 회복 신청하려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나. 【회복신청 원인】란은 회복신청을 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원인에 표시(예: ☒)합니다.

11. 【특허(등록)증 수령방법】란

납부구분이 ‘설정’ 특허·등록료인 경우에만 적으며, 희망하는 수령방법을 표시(예: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 선택 시 특허(등록)증은 특허로(www.patent.go.kr)의 「전자등록증 수신함」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2.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사항 정정신청】란

이미 납부한 특허(등록)료·수수료 또는 등록면허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금액을 이 서식에 따라 발생하는 특허(등록)료 및 등록면허세로 이체하려는 경우에 다음 예와 같이 【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접수번호】란을 만들어 해당 서식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접수번호를 적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번호의 수만큼 【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접수번호】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사항 정정신청】

【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접수번호】 2-1-2006-0518678-52

13. 【첨부서류】란

가.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 (1)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소기업 감면서류 1통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나.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에 의해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 10-1234567-00-00

-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소기업 감면서류 1통 [이하에 명거된 제출서류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등록)료 납부서

【특허(등록)번호】 10-1234567-00-00

다. 감면 및 면제 대상자의 증명서류 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예와 같이 제출 합니다.

【감면 및 면제사유별 증명서류 예】

- (1) 감면사유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2) 감면사유가 공공연구기관 중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임을 증명하는 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3) 감면사유가 공공연구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出捐)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국가등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出資)받거나 출연받은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방위사업청이 기술이전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4) 감면사유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경우(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5) 면제사유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대상자인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6) 면제사유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7) 면제사유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장애인수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8) 면제사유가 학생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라. 회복신청을 하는 경우의 증명서류 제출

특허(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해 특허(등록)출원 및 특허(등록)권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 또는 특허(등록)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해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마. 특허(등록)료 납부의 기준일이 되는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이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 발송일”과 다른 경우에는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을 증명하는 서류(배달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 (3)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스캐닝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전자적 이미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납부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대위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위신청인도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나. 등록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등록료, 등록면허세 및 인지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http://www.giro.or.kr>) 지로 납부서비스 또는 신용카드납부를 이용합니다.

다. 등록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등록료, 등록면허세 및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

[연장할 등록료] ☐상표등록료 ☐존속기간갱신등록료 ☐지정상품(업무)추가등록

[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연장대상의 표시]

[출원번호]

([등록번호])

위와 같이 등록료납부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기재요령 제7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7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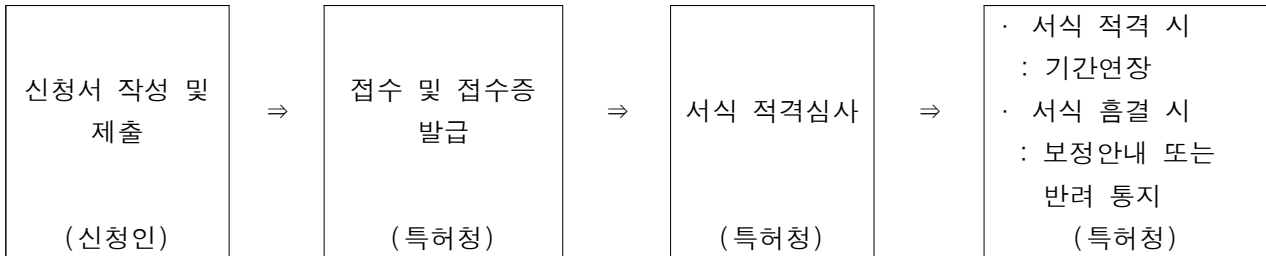
([서류명])

([특허(등록)번호(접수번호)])

1. 서식의 용도

이 서식은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을 30일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연장할 등록료]란

"상표등록료", "존속기간갱신등록료", "지정상품(업무)추가등록료" 중에 신청하려는 연장 대상 등록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 합니다.

2. [신청인]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를 적지 않아도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나.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신청인 ○○○의 대리인

라.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이를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 [연장대상의 표시]란

[출원번호]란에는 등록하려는 사건의 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순서로 적습니다.

[예] [연장대상의 표시]

[출원번호] 40-2002-1234567

[등록번호]란에는 상표등록료의 2회차 납부기간, 존속기간갱신등록료의 납부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예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서로 적습니다.

[예] [연장대상의 표시]

[등록번호] 40-1234567-00-00

5. [수수료]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연장신청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절차 구분	관련 규정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6. [수수료자동납부번호]란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7. [첨부서류]란

가.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 (1)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위임장 1통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보존번호: 000-000000]

나.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에 의해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 10-1234567-00-00

-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여 **명확하게 적어**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 2-1-02-1234567-12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작성 시 유의사항

신청인(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

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